

# 구미시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

구 미 시

# 구미시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4. . .  
제출자 : 구미시장

## 1. 제안이유

구미시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위탁 만료일이 2024. 12. 31. 일자로 도래함에 따라, 어린이·사회복지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·안전·영양 지도관리 및 교육 등을 실시하는 「어린이·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」 사업을 전문기관에 재위탁 운영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사무명 : 구미시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

나. 추진근거

- (1) 「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
- (2) 「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시행령 제12조의2
- (3)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

다. 위탁사무 : 구미시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

- (1) 급식소에 대한 영양·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
- (2)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, 급식환경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
- (3) 어린이의 연령별, 노인·장애인 등의 질환별·장애유형별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·보급
- (4) 어린이, 조리원, 취약계층, 종사자 등 대상별 위생 및 영양 교육 프로그램 운영

- (5) 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
- (6) 급식소 이용자별 영양상태 평가, 영양관리카드 작성관리, 식생활 교육 및 상담
- (7)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·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단체급식의 위생·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라. 위탁시설 개요**

- (1) 시설명 : 구미시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
- (2) 사업대상 : 총 404개소 9,659명  
(어린이급식소 363개소 8,756명, 사회복지급식소 41개소 903명)
- (3) 직원현황 : 20명(센터장 1, 팀장 3, 직원 16명)

**마. 위탁기간 : 2025. 1. 1. ~ 2027. 12. 31. (3년)**

**바. 소요예산 : 1,170백만원(국비 585, 지방비 585)**

**사. 수탁기관 선정개요**

- (1). 모집방식 : 일반공개모집
- (2). 자격요건
  -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 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
  - 「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」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
  -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,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,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
  -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
(3) 선정방법 :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

(4) 평가내용 : 수탁제안서를 통한 전문성, 책임능력 등 종합 심사

**아. 적정성검토결과 : 적정 ※ 2024년 제3차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**

### 3. 추진일정

- 가.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개최 : 2024. 11.
- 나.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: 2024. 12.
- 다. 위수탁 협약체결 : 2024. 12.

### 4. 참고자료

#### 가. 관계법령

- (1)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
- (2)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
- (3)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

# 관계법령

## □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

제21조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(이하 “급식소”라 한다)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·도지사가 시장·군수·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
2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·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
3. 「학교급식법」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
4.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(이하 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”라 한다)의 통합 운영·관리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, 「학교급식법」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·운영

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,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·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## □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」

제12조의2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
2. 「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」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
3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,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,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
4.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

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.

## □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5조(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
2.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·영양관리 지도
3.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·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
4.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

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,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.

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, 자격 및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## □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5조(의회 동의)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
2. 수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 또는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3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# 구미시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

## I. 비용추계 요약

### 1. 재정수반요인

구미시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 사업 운영을 통해 어린이 및 사회복지 시설의 위생 관리 및 대상자 맞춤형 영양 식단 프로그램 운영으로 재정 소요가 예상됨

#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- 가. 2024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가이드라인에 따른 예산 편성기준 준용(식약처,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)
- 나.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으로 함

#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- 가. 향후 3년간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은 총 3,569백만원으로 연평균 1,190백만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
(단위:백만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계
세출	1,170	1,190	1,209	3,569

### 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:백만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합계
국비	585	595	604.5	1,784.5
지방비	585	595	604.5	1,784.5
계	1,170	1,190	1,209	3,569

### 5. 부대의견 : 없음

### 6. 작성자 : 위생과 식품안전팀 하진숙(☎480-5592)

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기 간	항 목	예 산 액	산 출 기 초			
합 계		3,569,140				
2025	소계	1,170,000				
	인건비	651,000	• 급 여			650,500천원
			• 일 용 임 금			500천원
	운영비	419,000	• 일반수용비			225,680천원
			• 기타운영비 등			193,320천원
	기타	100,000	• 여비			21,000천원
			• 특정업무경비			72,000천원
• 자산취득비					7,000천원	
2026	소계	1,189,400				
	인건비	668,000	• 급 여			667,275천원
			• 일 용 임 금			725천원
	운영비	419,000	• 일반수용비			225,680천원
			• 기타운영비 등			193,320천원
	기타	102,400	• 여비			21,600천원
			• 특정업무경비			73,800천원
• 자산취득비					7,000천원	
2027	소계	1,209,740				
	인건비	686,000	• 급 여			684,700천원
			• 일 용 임 금			1,300천원
	운영비	419,000	• 일반수용비			225,680천원
			• 기타운영비 등			193,320천원
	기타	104,740	• 여비			22,140천원
			• 특정업무경비			75,600천원
• 자산취득비					7,000천원	

소 관 부 서		위 생 과
입 안 자	과 장	민 명 숙
	팀 장	이 영 혜
	담 당 자	하 진 숙 (480-5592)